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표준적 표현 및 한자어 정비〉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94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V . 관계기관 의견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철승의원 등 11명
2. 제 안 일 : 2025. 10. 10.
3. 회 부 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편 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내용 중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한자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편제2장의 제목 “人”을 “사람”으로, 제148조·제149조 중 “未定한”을 “확정되지 않은”으로, 제195조 중 “받어”를 “받아”로, 제209조제2항 중 “直時(직시)”를 “즉시”로,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까스管”을 “가스관”으로, 제574조 중 “不足되는”을 “부족한”으로, 제1034조제1항 본문 중 “相續財産으로서”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편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현 행	개 정 안
第2章 人	第2章 사람
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條件 있는 法律行爲의 當事者는 條件의 成否가 未定한 동안에 條件의 成就로 因하여 생길 相對方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 ----- ----- <u>확정되지 않은</u> ----- ----- -----.
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等) 條件의 成就가 未定한 權利義務는 一般規定에 依하여 處分, 相續, 保存 또는 擔保로 할 수 있다.	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等) ----- ----- <u>확정되지 않은</u> ----- ----- -----.
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	第195條(占有補助者) -----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아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第209條(自力救濟) ① (생략)

② 占有物이 侵奪되었을 境遇에 不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侵奪後 直時 加害者를 排除하여 이를 奪還할 수 있고 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現場에서 또는 追跡하여 加害者로부터 이를 奪還할 수 있다.

第218條(水道等 施設權) ① 土地所有者는 他人의 土地를 通過하지 아니하면 必要한 水道, 疏水管, 가스管, 電線等을 施設할 수 없거나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境遇에는 他人의 土地를 通過하여 이를 施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한 損害가 가장 적은 場所와 方法을 選擇하여 이를 施設할 것이며 他土地의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2條의 規定은 數量을 指定한 賣買의 目的物이 不足되는 境遇와 賣買目的物의 一部가 契約當時에 이미 滅失된 境遇에 買受人이 그 不足 또는 滅失을 알지 못한 때에 準用한다.

第1034條(配當辨濟) ① 限定承認者는

----- 받아 -----

-----.

第209條(自力救濟) ① (현행과 같음)

② -----

즉시 -----

-----.

第218條(水道等 施設權) ① -----

----- 가스관 -----

-----.

② (현행과 같음)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부족한 -----

-----.

第1034條(配當辨濟) ① -----

第1032條第1項의 期間滿了後에 相續 財産으로서 그 期間內에 申告한 債 權者와 限定承認者가 알고 있는 債 權者에 對하여 各債權額의 比率로 辨濟하여야 한다. 그러나 優先權있 는 債權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② (생략)	----- 상 속재산으로써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2. 개정안 검토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60년이 경과하였으나 전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예를 들어, “직시”는 통상적으로 “대상을 똑바로 본다”의 의미¹⁾로 쓰이나, 현행법 제209조제2항에서의 “直時(직시)”는 “가능한 신속하게”의 의미로 사용되는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할 수 있고, 제574조 중 “不足되는”에서 “부족”은 그 자체로 모자라다는 의미를 가지는바 “되다”라는 피동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아니하므로, “까스管”의 “ㄱ”을 “ㄴ”으로 변경하여 “가스”로 정비한 부분도 적절할 것으로 보임.²⁾

1) 직시(直視), 한국표준대국어사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1편제2장 제목 “人”을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제1편제3장의 “법인”과 구분하여 “자연인”을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법에 따른 인격 주체로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바, “人”을 “사람”으로 순화할 경우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개정 대상이 되는 단어만을 한글화하여 정비하고 있어, 같은 조 안에서도 일부 항에 대해서만 한글화하고 있는 등 해당 조문 전체의 한글화 및 시제의 일치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정부는 2025년 12월 18일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의 전면 개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이하 “정부안”)³⁾하였는데, 개정안과 정부안에서 제148조·제149조 및 제574조의 개정 대상이 각각 중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개정안은 개정 대상이 되는 단어만을 한글화하고 있으나 정부안의 경우 조문 전체를 한글화하고 있다는 점, ② 제148조·제149조에서 개정안은 “未定한”을 “확정되지 않은”으로 개정하는 반면 정부안은 “확정되지 아니한”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 부록 정비권고용어 p.16

3) 의안번호 22153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 12. 18. 제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임.

한편, 제574조에 따른 수량부족·일부멸실 하자의 구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개정안은 “不足되는”을 “부족한”으로 일부 정비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체 체계를 변경⁴⁾함에 따라 종전의 제574조를 전면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제574조의 정비방식은 하자담보책임 체계의 정비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권철승의원안)	개정안(정부안)
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條件 있는 法律行爲의 當事者는 條件의 成否가 <u>확정되지 않은</u> 동안에 條件의 成就로 因하여 생길 相對方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u>확정되지 아니한</u>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等) 條件의 成就가 <u>확정되지 않은</u> 權利義務는 一般規定에 依하여 處分, 相續, 保存 또는 擔保로 할 수 있다.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 여부가 <u>확정되지 아니한</u>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2條의 規定은 數量을 指定한 賣買의 目的物이 <u>부족한</u> 境遇와 賣買目的物의 一部가 契約當時에 이미 滅失된 境遇에 買受人이 그 不足 또는 滅失을 알지 못한 때에 準用한다.	<u>제574조(손해배상)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추완이행이 부적절하게 행하여진 때에는 매수인은 제395조제1항의 최고 없이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

4) 현행 「민법」은 하자유형을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제수단과 그 행사요건·행사기간 등을 각각 규정하였으나, 정부안은 하자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라로 구분하되, 그 구제수단을 추완이행·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체계로 통일함.

IV.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민법의 체계, 판례와 실무의 용례, 국민의 이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음.

다만, 정부가 2025. 12. 18. 국회에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48조, 제149조, 제574조를 개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대상 조문을 한글화하는 취지인데, 「민법」의 법문에 관해서는 민법 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⁵⁾

문 의 처
02)6788-5054

5) 법무부는 2023년 6월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민법전 분야별로 개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고, 2025년 12월 18일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계약법’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이며, 그 외 규정에 대한 개정안 마련 작업도 계속하고 있음.